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으로 개정되고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률 명칭 변경으로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변경
- 위원회의 구성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여성위원의 위촉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안 제2조제4항)
 - 위촉의 해지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항)
- 위원회의 회의
 -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안 제5조제3항)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5조제4항)
-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 원칙(안 제9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본 위원회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위원회 조례의 근거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심의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안 제2조제1항), 여성위원의 위촉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위촉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항)을 신설하여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등을 서면 통지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안 조례 제5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공개(안 제5조제4항)와 회의록작성 및 회의록의 공개원칙(안 제9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은 회의록 작성에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회의록) ①위원장은 <u>회의록을 작성 비치하</u> <u>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u> <u>여야 한다.</u> (신 설) ②<u>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9조(회의록) ①위원회는 <u>회의록을 작성하고 다</u> <u>음 사항을 기재한다.</u> 1. <u>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u> 2. <u>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u> 3. <u>부의안건과 그 내용</u> 4. <u>의사</u> 5. <u>표결참가자 성명</u> 6. <u>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사항</u> ② <u>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u> <u>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u> ③(개정안 제2항과 같음)

안 제10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자는 것으로서, 자치입법편람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자구수정이라 생각합니다.